

[한국투자 밸류 자산운용 펀드 변경대비표]

펀드명 :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투자신탁(주식)

변경 문서 : 신탁계약서, (간이)투자설명서

변경사유 : **모자형펀드로 변경**

1) 신탁계약서

항목	변경전	변경후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투자신탁(주식)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투자신탁(주식)
제 2 조(용어의 정의)	<p>1.~3.<생략></p> <p><신설></p> <p>5.~8.<생략></p> <p><신설></p> <p>10.<생략></p>	<p>1.~3.<현행과 같음></p> <p>4.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말한다.</p> <p>5.~8.<현행과 같음></p> <p>9. “모자형” 이라 함은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로서 자투자 신탁이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외의 다른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것과 자투자신탁 외의 자가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자투자신탁과모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한 투자신탁을 말한다.</p> <p>10.<현행과 같음></p>
제 3 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p>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한국밸류 10 년투자 100 세행복 증권투자신탁(주식)"라 한다.</p> <p>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p><신설></p> <p>③~④<생략></p>	<p>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한국밸류 10 년투자 100 세행복 증권투자신탁(주식)"라 한다.</p> <p>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6. 모자형 <p>③~④<현행과 같음></p>

	<신설>	⑤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해당 조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조항 신설 반영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 2. 법 시행령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 83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해당 조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조항 신설 반영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 3 조제 5 항제 1 호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2. 제 17 조 제 2 항 각 호 방법으로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제 19 조(운용 및 투자제한)	해당 조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조항 신설 반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제 1 호 내지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현행과 같음>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④ <생략>.	제 2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삭제>
제 25 조의 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가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 26 조의 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③<생략>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③<현행과 같음>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 ③ <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포함한다)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35 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생략>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 37 조(수익자 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 ⑩ <생략>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 ⑨ <생략> ⑩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⑪ <현행과 같음>
제 43 조(신탁계약의 변경)	①~③<생략> ④ 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3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③<현행과 같음> ④ 수익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 또는 통지된 날(모투자신탁 신탁계약의 변경의 경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3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②<생략> ③. 1.~5.<생략> <신설>	①~②<현행과 같음> ③, 1.~5.<현행과 같음> 6.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④<생략> <신설>	①~④<현행과 같음> ⑤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5. <생략> ③~④<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 9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 월 이내에 법 제 248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70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 ③~④<현행과 같음>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 9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 월 이내에 법 제 248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70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변경전	변경후				
펀드명 변경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투자신탁(주식)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투자신탁(주식)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가치투자 운용철학에 따라 주로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종목에 집중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 <신설>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가치투자 운용철학에 따라 주로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90% 이상 투자 ※ 모투자신탁: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주식)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권에 주로 투자하는 가치투자 운용방식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내재가치에만 주목하여 장기투자하는 전략을 추구. (채권)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신설>	(주 6)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1.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가치투자 운용철학에 따라 주로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종목에 집중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1.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가치투자 운용철학에 따라 주로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종목에 집중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투자전략	2. 투자 전략: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저평가된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가치투자전략으로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주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동되며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2. 투자 전략: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 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수익 구조	3.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주식 등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주된 투자대상인 주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투자신탁에는 물건의 가격에 해당하는 기준가격이 있는데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매일 변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가입 시기(주식시장 침체기, 호황기)나 자금 납입 방식(적립식, 거치식) 등에 따라서도 이익 또는 손실이 변동됩니다.	3. 수익 구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자투자신탁 \ 모투자신탁</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자투자신탁(주식)</td> <td style="text-align: center;">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td> </tr> </table>	자투자신탁 \ 모투자신탁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자투자신탁 \ 모투자신탁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7.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2017년 3월 26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률 평균을 측정하여 연환산 표준편차가 10.77%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를 통한 실세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다소 높은 수준의 수익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2017년 3월 26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률 평균을 측정하여 연환산 표준편차가 10.77%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주식투자를 통한 실세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다소 높은 수준의 수익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8. 위험관리	<생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기재
제 1 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투자신탁(주식)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투자신탁(주식)
제 1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신설>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제 2 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투자신탁(주식)	한국밸류 10년투자 100세행복 증권투자신탁(주식)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신설>	2018.03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제 2 부. 6.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투자신탁(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증권투자신탁(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제 2 부. 6. 다. 모자형 구조	<신설>	[모자형 구조] 기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기재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가치투자 운용철학에 따라 주로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종목에 집중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가치투자 운용철학에 따라 주로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종목에 집중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가. 투자대상	<생략>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90% 이상 투자 유동성자산 10% 이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기재
8. 나. 투자제한	<생략>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기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기재
9. 가. 투자전략	<신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범

	<p><신설></p> <p>나. 위험관리 다. 매매전략 라. 수익구조</p> <p>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주식 등 자본증권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주된 투자대상인 주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투자신탁에는 물건의 가격에 해당하는 기준가격이 있는데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매일 변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가입 시기(주식시장 침체기, 호황기)나 자금 납입 방식(적립식, 거치식) 등에 따라서도 이익 또는 손실이 변동됩니다.</p>	<p>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p> <p>■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p> <p><삭제> <삭제></p> <p>나. 수익구조</p> <p>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주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됩니다.</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생략> <신설></p>	<p><현행과 같음></p> <p>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p>
<p>10.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2017년 3월 26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하여 연환산 표준편차가 10.77%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를 통한 실세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다소 높은 수준의 수익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2017년 3월 26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하여 연환산 표준편차가 10.77%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주식투자를 통한 실세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다소 높은 수준의 수익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p>
<p>11. 가.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p>	<p><신설></p>	<p>※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p>
<p>11. 나.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p>	<p><신설></p>	<p>※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주1) <생략></p> <p>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p>	<p>주1) <현행과 같음></p> <p>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p>

	<p>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직전 회계년도 : 2016.03.27~2017.03.26]</p> <p>주3) <생략></p> <p><신설></p> <p><신설></p>	<p>상이할 수 있습니다.[직전 회계년도 : 2016.03.27~2017.03.26]</p> <p>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주3) <현행과 같음></p> <p>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제 5 부. 1. 가. (1) 투자자총회의 구성</p>	<p>(가), (나), (다) <생략></p>	<p>(가), (나), (다) <현행과 같음></p> <p>(라)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p>
<p>제 5 부. 1. 나. 잔여재산분배</p>	<p>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p>	<p>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p>
<p>제 5 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p>	<p>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p>	<p>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p>
<p>제 5 부. 3. 가.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p>	<p>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p>	<p>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p>